



## 「NH알츠회전예금 II」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NH알츠회전예금 II
- 상품특징 :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고 회전주기마다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개인전용 회전예금

### 2 |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계약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22. 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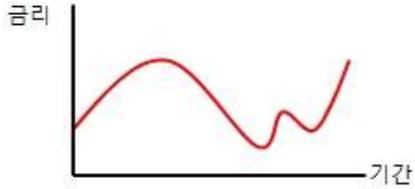
구분	내용							
가입대상	개인							
상품유형	정기예금							
거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 영업점, 비대면 채널</li> <li>■ 해지 :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li> </ul>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회전주기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월단위(회전주기는 금리가 변경 적용되는 주기를 말함)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 단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회전기간별 약정이율로 복리계산하여 만기에 일시지급						
	회전기간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회전주기에 이자지급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로 계산한 총 이자를 회전기간 월수로 나눠 매월지급						
※ 월이자지급식은 회전주기 3개월 이상 신청 시 가능하며, 기본이자율에서 0.10%p 차감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li> <li>※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li> </ul>							
기본이자율 (연%, 세전)	회전주기에 따라 이자율 변경적용							
	※ 이자율적용은 가입기간이 아닌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율을 적용' ▶ 작성기준일 현재 기본이자율이며 실제적용금리는 가입일의 고시이자율에 따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0.77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6	6개월이상~ 1년미만	1.35	1년	1.73

우대이자율 (연%p, 세전)	※ 최고 0.20 (우대이자율은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에 적용)	
	조건내용	우대이자율
	전월 급여이체실적(5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0.10
	계약기간 내 연속 3회전 이상 회전기간을 유지하는 계좌에 대해 4회전 기간부터 회전기간 충족분에 제공	0.10
중도해지이자율 (연%, 세전)	경과기간	적용이율/적용률
	3개월 미만	0.1
	6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율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9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 미만	중도해지 기준이율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11개월 이상	중도해지 기준이율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중도해지 기준이율	가입일 당시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기본이율
	※ 회전기간이 충족된 기간은 약정이율을, 회전기간 미충족 기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본 상품 회전주기별 기본이율 - 신규일 이후 1회전기간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 - 1회전이상 경과 한 후에 중도해지 시에는 회전기간 충족분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회전기간 미충족분에 대하여는 회전기간 응당일부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최종이자율결정일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 ■ 중도해지이자율 : 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 넷째자리에서 절사) - 중도해지 최저이자율은 0.1%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만기후이자율 (연%, 세전)	만기후 3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50%
	만기후 6개월 이내	일반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20%
	만기후 6개월 초과	일반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10%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만기일시지급식의 만기 후 이자율은 복리계산하지 않음)	
만기이자 산출근거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회전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의 합 [이자계산 산식] 각 회전기간이자*의 합 *(신규금액 × 회전기간별 약정이율 × 회전기간 ÷ 12)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가능	
부분인출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가능 (단, 부분인출 후 잔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재예치	불가	

추가적립	불가
계약해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b>을 통해 해지 가능</li> <li>■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li> <li>■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회전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계산 기간에서 차감하여 약정이율을 적용)</li> </ul>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b>일정 기간 이내</b>에 금융소비자가 <b>계약 해지</b>를 <b>요구</b>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b>10일 이내</b>에 <b>수락 여부를 통지</b>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b>거절사유와 함께 통지</b>하여야 합니다.</li> <li>■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li> </ul>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li> </ul>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b>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b>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 3 | 유의 사항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형태		
특징	▶ 예금 가입 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장점	▶ <b>시장금리 하락기</b> 에 이자율 하락 없음	▶ <b>시장금리 상승기</b> 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단점	▶ <b>시장금리 상승기</b> 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b>시장금리 하락기</b> 에는 이자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마케팅지원부)

## <별지1> 예금성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b>권리구제를 위한 목적</b>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구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ul> </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b>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b></li> </ul>	
위법계약 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b>일정 기간 이내</b>에 금융소비자가 <b>계약 해지</b>를 <b>요구</b>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b>10일 이내</b>에 <b>수락 여부를 통지</b>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b>거절사유와 함께 통지</b>하여야 합니다.</li> <li>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li> </ul>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p>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b>고객상담센터 (1661-3000, 1522-3000)</b> 또는 <b>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banking.nonghyup.com">http://banking.nonghyup.com</a>)</b>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b>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b> 또는 <b>e-금융민원센터(<a href="https://www.fcsc.kr">https://www.fcsc.kr</a>)</b>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예금자보호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b>해당</b></p>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b>보호한도</b>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b>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b>이며, <b>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b></p>

##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li> </ul>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li> </ul>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li> </ul>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li> <li>*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li> </ul>